

# 예산총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35,126,099	19,053,783
일반회계	517,004,092	15,510,123
특별회계	118,122,007	3,543,660
공기업특별회계	48,308,311	1,449,249
상수도사업	12,244,462	367,334
하수도사업	36,063,849	1,081,915
기타특별회계	69,813,696	2,094,411
의료급여기금	1,898,952	56,969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167,860	5,036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70,000	2,100
농공지구조성	26,215,532	786,466
중소기업육성자금	5,629,286	168,8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158,150	34,745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03,515	6,10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02,664	24,080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21,127,800	633,834
수질개선관리	4,431,157	132,935
보건진료	1,899,660	56,990
농업발전기금	6,209,120	186,27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63,079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5,1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